

JBIC의 외국정부 등 앞 브릿지론 운영 현황

(2014. 1.)

동경사무소

- (취급근거) JBIC의 외국정부 등 앞 브릿지론 관련 업무는 '11.5.2자로 공포 및 시행된 「주식회사 국제협력은행법」 (“신JBIC법”으로 통칭)의 제11조(업무의 범위)에 JBIC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음

신JBIC법(11. 5. 2) 중 브릿지론 관련 조항

(업무의 범위)

제11조 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5 외국의 정부 또는 외국의 거주자에 있어 해당 외국의 국제 수지상의 이유로 수입 또는 기타 대외 거래를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한편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제통화기금 등(국제통화기금 그 외의 국제기관 또는 해당 외국 이외의 2개 이상 국가의 정부, 정부 기관 혹은 은행을 말한다)이 해당 외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하 「경제지원자금」이라고 한다.)의 공여를 실시할 때까지 해당 외국 정부, 정부 기관 또는 은행에 대해서 해당 수입 또는 기타 대외 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기자금(자금 수요의 기간이 1년 이하의 것을 말한다)을 대출하는 것.

- (취급조건) ①국제통화기금 등에 의한 경제지원자금 공여가 확실하다고 전망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③재무대신의 인가를 조건으로 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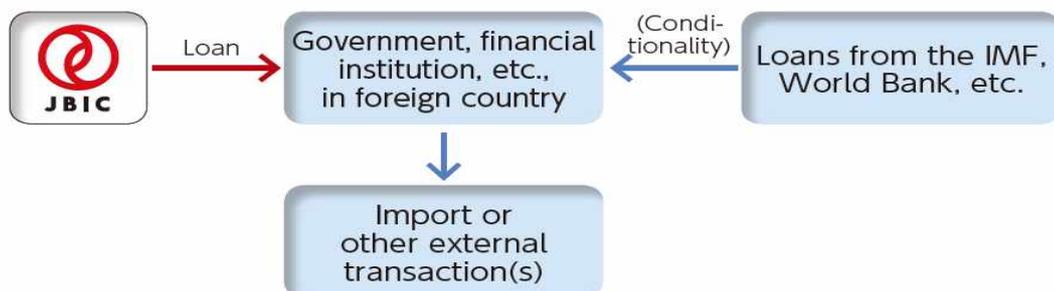
1) 국제통화기금 등에 의한 경제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대출과 관련된 자금의 상환에 충당됨으로써 상환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대출에 대해서 확실한 담보를 청구하는 경우

□ (세부사항) JBIC의 외국정부 등 앞 브릿지론 관련 업무의 세부 업무방법은 JBIC 업무방법서 제6장(브릿지론)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음

- (대출용도) 외국정부 등이 국제수지 상의 이유로 수입 등 대외 거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긴급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국제통화기금 등의 경제지원자금 공여가 이루어질 동안 수입 등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일시적으로 지원
- (차주) 외국 정부기관 또는 은행
- (대출금액) 국제통화기금 등에 의한 경제지원자금의 총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 내
- (대출방법) 원칙적으로 증서대출
- (대출이율 및 기한) 은행 등의 통상 거래조건,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책정
- (상환방법) 원칙적으로 분할 또는 만기상환
- (담보조건) 국제통화기금 등(JBIC 제외)에 의한 경제지원자금의 공여에 의해 자금상환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강구하되, 동 조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실한 담보를 청구

〈JBIC의 브릿지론 지원구조〉



□ (취급실적) 신JBIC 출범('12.4월) 이후 JBIC은 '13. 1월중 미얀마 정부 앞으로 942백만불의 브릿지론을 제공한 바 있음

- 대출용도 및 담보조건 등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 바, 기존 지원 건은 舊 일본수출입은행 시절을 포함하더라도 1993년 2건(페루, 베트남) 뿐임

JBIC의 對미얀마 정부 앞 브릿지론 제공 건

- (지원개요) JBIC이 미얀마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국제개발협회(IDA)로부터 신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 기관 앞 기존 연체 채무해소를 위한 자금 일시 지원
- (지원배경) 일본정부는 민주화에 따라 미얀마의 대외개방이 가시화됨에 따라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풍부한 동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대규모 인프라 개발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브릿지론을 제공
- (지원내용) 2회에 걸쳐 미얀마 정부 앞 브릿지론 총 942백만불 지원
 - '13. 1. 17자로 ADB 채무 해소 관련 512백만불 지원
 - '13. 1. 25자로 IDA 채무 해소 관련 430백만불 지원

<참고자료 1> JBIC 업무방법서 中 브릿지론 부문 발취

제6장 브릿지론

제38조 브릿지론은 국제통화기금 등에 의한 경제지원자금 공여가 확실하다고 전망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무대신의 인가를 받고 실행한다.

- 1 국제통화기금 등(JBIC 제외)에 의한 경제지원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대출과 관련된 자금의 상황에 충당됨으로써 상환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 2 해당 대출에 대해서 확실한 담보를 청구하는 경우

제39조 브릿지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실행한다.

1 대출금의 용도

외국정부 또는 외국거주자가 해당 외국의 국제수지 상의 이유로 수입 등 기타 대외거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긴급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국제통화기금 등의 경제지원자금 공여가 이루어질 동안 해당 수입 등 기타 대외 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2 대부의 상대방

외국 정부, 정부 기관 또는 은행

3 대출금의 금액

국제통화기금 등(JBIC 제외)에 의한 경제지원 자금의 총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

4 대부의 방법

증서 대출로 한다

5 이율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의 해외 개발 및 취득 촉진 혹은 우리나라의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 및 향상 또는 국제 금융 질서의 혼란 방지 또는 그 피해에의 대처를 위한 중요도, 상환기한, 은행 등의 거래의 정상적인 조건 또는 금융 시장의 동향 기타의 사유를 감안하여 정한다.

6 상환 기한

1년 이내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의 해외 개발 및 취득 촉진 혹은 우리나라의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 및 향상 또는 국제 금융 질서의 혼란 방지 또는 그 피해에의 대처를 위한 중요도, 국제 통화기금 등(JBIC 제외)에 의한 경제지원자금 공여가 실시되는 시기, 은행 등의 거래의 정상적인 조건 또는 금융 시장의 동향 기타의 사유를 감안하여 정한다.

7 상환의 방법

분할 변제 또는 정기 상환한다

8 담보 및 보증

원칙적으로 국제통화기금 등(JBIC 제외)에 의한 경제지원자금 공여가 적시에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JBIC의 대부와 관련된 자금 상환이 확보되는 조치를 강구한다. 다만, 동 조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실한 담보를 청구한다